

산업재산권에 대한 소고(小考)

글 · 조형래 전무 질레트코리아(주)

산업(産業)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4권리를 말하며, 이 산업재산권 제도를 일반적으로 특허제도라고 칭한다.

특허권(patent right)

특허권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즉 발명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전용(專用)·독점(獨占)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발명한 사람은 그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가 있으며 이 권리를 <특허를 받을 권리>라고 한다.

특허권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 물건의 특허권과 방법의 특허권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물건의 특허권은 그 물건을 제작하고 사용하여 판매하는 전용권(專用權)이고, 방법의 발명에 주어진 특허권은 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사용하고 판매하는 전용권이다.

또한 독립발명에 주어진 특허권을 독립특허권, 개량발명에 주어진 특허권을 의존특허권이라고 부른다. 특허권자가 아닌 자(者)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권리를 특허실시권이라고 부른다. 이에는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허락실시권(許諾實施權),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생기는 법정실시권,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허락실시권에 의하여 생기는 전용(專用)실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결과,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발명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약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법률상의 이유없이 그 권리의 내용이 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거나 침해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조치, 침해행위가 되어 있는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침해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 model utility right)

이미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따위에 새로운 연구를 하여 실제로 쓰이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고안(新規考案)으로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지칭한다.

실용신안권은 등록을 받은 실용신안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인데, 실용신안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을 것 그리고 출원 전에 한국 내에서 공연(公然)히 알려졌거나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것임을 요한다.

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고안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 존속기간은 10년이다.

의장권(意匠權 : design right)

의장권이란 공예품 등의 물품에 외관상 미감(美感)을 주기 위하여 그 모양과 빛깔

또는 그 조화(調和)를 더하는 특수 고안을 말한다. 즉 물건의 형상이나 모양 및 색채의 결합으로 산업상 심미적 가치(審美的價値)가 있는 고안을 한 자가 등록함으로써, 획득하는 것으로 그 독점기간은 8년이다.

상표권(商標權 : trade mark right)

상표권이란 자기 공장에서 생산·가공·판매·확보하고 있는 자기 상표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된 것을 상표로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상표란 상공업자(商工業者)가 자기의 생산·제조·가공·선택·증명·취급 및 판매 영업에 관계되는 상품임을 알리려고 상품에 붙이는 표지(標識)이다.

상표를 등록하게 하는 제도는 등록자에게 그 상표를 계속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또 산업적으로나 상행위상 업자의 신용을 확립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존속기간은 10년이다.

산업(產業)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4권리를 말하며, 이 산업재산권 제도를 일반적으로 특허제도라고 칭한다. 특허권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실용신안권은 등록을 받은 실용신안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의장권이란 공예품 등의 물품에 외관상 미감(美感)을 주기 위하여 그 모양과 빛깔 또는 그 조화(調和)를 더하는 특수 고안을 말한다. 끝으로 상표권이란 자기 공장에서 생산·가공·판매·확보하고 있는 자기 상표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된 것을 상표로서 등록한 것을 말한다.